

하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092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5. .
제출자 : 하남시장

1. 제안이유

-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고독사에 대한 정의를 정비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인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 변경(안 제2조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서: 덧붙임

5. 신구조문 대비표: 덧붙임 (일부개정안)

6. 예산수반 사항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 결과

- 가. 예고 기간: 2025. 3. 31. ~ 2025. 4. 21.(21일간)
- 나. 의견 내용: 의견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- 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: 해당 없음

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: 개선의견 없음

다. 부패영향 분석평가: 원안 동의

9. 참고사항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: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

하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하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고독사”란 가족,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·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복지정책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·성명	복지정책과장 최 현 숙
	팀장 직위·성명	희망복지팀장 구 경 숙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최 동 찬 (031-790-5532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<u>“고독사”란 가족,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·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,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.</u></p> <p>2.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<u>“고독사”란 가족,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·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.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 발췌서

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4. 3. 15.] [법률 제19716호, 2023. 9. 14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“고독사”란 가족,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·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.